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49
----------	------

제출년월일 : 2007. 3.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추가함(안 제2조제1호)
- 나. 증가산금 징수 적용대상을 체납액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안 제8조제1항)
- 다. 1993년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정률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장, 진입로, 비거리개 등의 점용료를 100분의 80으로 경감함(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1) 「도로법」 제43조·제78조·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내지 4
-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3)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07.2.2 ~ 2007.2.22)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징수”를 “징수 및 독촉”으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1의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단위: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공중 전화 등 지상 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단위: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공중 전화 등 지상 시설물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54,2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 한금액
2. 수도관·전 력구 등 지하 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 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 (맨홀), 전력구,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	외경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외경 0.1m 초과 0.2m 이하			2,400
		외경 0.2m 초과 0.4m 이하			4,850
		외경 0.4m 초과 0.6m 이하			7,250
		외경 0.6m 초과 0.8m 이하			9,650
		외경 0.8m 초과 1.0m 이하			12,100
		외경 1.0m 초과 2.0m 이하			18,100
		외경 2.0m 초과 3.0m 이하			30,150
		외경 3.0m 초과			42,250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	외경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외경 0.1m 초과 0.2m 이하			3,600
		외경 0.2m 초과 0.4m 이하			7,200
		외경 0.4m 초과 0.6m 이하			10,850
		외경 0.6m 초과 0.8m 이하			14,400
		외경 0.8m 초과 1.0m 이하			18,100
		외경 1.0m 초과 2.0m 이하			27,100
		외경 2.0m 초과 3.0m 이하			45,200
		외경 3.0m 초과			63,250
3. 광고탑, 광 고판, 간판, 돌 출간판, 시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년	400
		기 타	표시면적 1㎡	1년	122,0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58,400
	시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 한 것을 포함한다)		표시면적 1㎡	1일	400
	아 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244,000
		기타			122,00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단위: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8. 공사용 판자대, 벽, 발판, 기소 등의 시설 및 재료, 착부분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400
	기 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 한 금액

별표1의 제4호중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진입로”를 “진·출입로”로 한다.

별표1의 제5호 내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별표1의 제11호중 “농업 및 식물재배”를 “농업,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로 한다.

별표1의 비고 제1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액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비고 제9호마목중 “위 표 제10호”를 “위 표 제11호”로,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를 “농업, 주택,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로 한다.

별표1의 비고 제3호 및 제11호를 삭제하고, 비고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비고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1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는 80/100을 경감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별표1의 비고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③(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도로점용허가) (본문생략) 1. <u>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u>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u>기타 이와 유사한 것</u> 3. 구청장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및 <u>기타 이와 유사한 것</u>	제2조(도로점용허가) (현행과 같음) 1. <u>광고탑, 광고판, 시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u> 2. ----- ----- <u>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u> 3. ----- ----- <u>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u>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생략) ② <u>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u>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u>② 삭제</u>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u>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 ----- ----- <u>징수 및 독촉</u> ----- <u>이 경우,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u>〈단서신설〉</u> ② ~ ③ (생략)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 ----- ----- <u>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1]

점용로 산정기준 (제3조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현행	개정안					
1. 전주·공중 전화 등 지상 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350	1,850					
	<현행>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000	2,750					
	<개정안>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전 력구 등 지하 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 기관, 전기통신 관, 가스관, 송 열관, 송유관, 작 업구(맨홀), 전 력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외경 0.1m 이하 외경 0.1m 초과 0.2m 이하 외경 0.2m 초과 0.4m 이하 외경 0.4m 초과 0.6m 이하 외경 0.6m 초과 0.8m 이하 외경 0.8m 초과 1.0m 이하 외경 1.0m 초과 2.0m 이하 외경 2.0m 초과 3.0m 이하 외경 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850	1,150				
					1,750	2,400				
					3,500	4,850				
					5,250	7,250				
					7,000	9,650				
					8,750	12,100				
					13,100	18,100				
					21,850	30,150				
					30,600	42,250				
	<현행> 어스앵커, 압거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외경 0.1m 이하 외경 0.1m 초과 0.2m 이하 외경 0.2m 초과 0.4m 이하 외경 0.4m 초과 0.6m 이하 외경 0.6m 초과 0.8m 이하 외경 0.8m 초과 1.0m 이하 외경 1.0m 초과 2.0m 이하 외경 2.0m 초과 3.0m 이하 외경 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1,300	1,800				
					2,600	3,600				
					5,200	7,200				
					7,850	10,850				
					10,450	14,400				
					13,100	18,100				
					19,650	27,100				
					32,750	45,200				
					45,850	63,250				
					<개정안>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압 거,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	외경 0.8m 초과 1.0m 이하 외경 1.0m 초과 2.0m 이하 외경 2.0m 초과 3.0m 이하 외경 3.0m 초과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현행	개정안
3. <u>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u> <개정안> 3. <u>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u>	<현행>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년	300	400
	<개정안>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기 타	표시면적 1㎡	1년	88,400	122,000
		시설안내표지	1개	1년	73,650	101,65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88,400	58,400
	<현행> 현수막 <개정안>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표시면적 1㎡	1년	300	400
4. <u>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u>	<현행> 아 천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176,800	244,000
	<개정안> 아 천	기타			88,400	122,000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 지 가 격 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 지 가 격 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 지 가 격 에 0.06을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 지 가 격 에 0.065를 곱한 금액	
		<현행> 진입로 <개정안> 진·출입로			토 지 가 격 에 0.025를 곱한 금액	
5. <u>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u>		기 타			토 지 가 격 에 0.05를 곱한 금액	
			점용면적 1㎡	1년	토 지 가 격 에 0.04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현행	개정안	
6. 지하상가, 지 하실, 통로, <u>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u>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 지 가 격 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 지 가 격 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 지 가 격 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 지 가 격 에 0.0075를 곱한 금액		
	육교상가, 기타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7.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 대, <u>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u>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 벽, 발판, 대 기소 등의 공 사용시설 및 재료, 굴착부 분, 기타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300	40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u>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u>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10. 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 공 고, 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u>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u>			점용면적 1㎡	1년	토 지 가 격 에 0.0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내지 제 1 0 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 설	〈현행〉 농업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 을 곱한 금액		
	〈개정안〉 농업,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토 지 가 격 에 0.025를 곱한 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 비 고

현행	개정안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u>지가공시</u> <u>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u> 에 의한 개 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 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 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1. ----- 「 <u>부동산가격공시</u> <u>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u> <u>등이 0.5㎡ 또는 0.5m 미만의 단</u> <u>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u> <u>아니하고, 0.5㎡ 이상 1㎡ 미만 또</u> <u>는 0.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u> <u>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u> <u>로 계산한다.</u>	3. (삭제)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9. (본문생략)	9.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위 표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u> <u>중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이외의</u> <u>점용물</u>	마. <u>위 표 제11호 -----</u> <u>농업, 주택,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u> <u>물 위탁판매 이외의 점용물</u>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11. <u>위 표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u> <u>버스카드판매대·구두수선대 및 가</u> <u>로판매대는 점용료 산정총액이 연간</u> <u>7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u> <u>700,000원으로 한다.</u>	11. (삭제)
(신설)	12. 「 <u>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u> <u>특별법</u> 」 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 <u>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u> <u>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u> <u>용료는 80/100을 정감한다.</u>
12. (생략)	13. (현행과 같음)